

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1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5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7. 3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여 덕 수)

가. 제정이유

- 1,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종로구의 문화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 · 육성하고,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 등 문화 · 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· 육성하기 위하여 협력계획을 수립하고, 협의회를 설립을 지원
-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함
- 구청장은 협의회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
-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 · 세출 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 정 인 훈 위원 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안 제3조제2항에 “협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”고 하였으나,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“허가주의”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의 “인가”를 “허가”로 수정함.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3조제2항중 “인가”를 “허가”로 한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·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·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중 “인가”를 “허가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협의회 등) ① (생략)	제3조(협의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협의회는 「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허가-----.